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77
----------	------

2021년 07월 0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1년 05월 27일
- 다. 회부일 : 2021년 05월 31일
- 라. 상정일 :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병기 인권담당관)

가.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의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1. 4. 1. ~ 4. 21.) 결과 : 의견 없음.

- 본 개정안은 법적 기술상 부적절하고 해석상 법적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비대상으로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정의조항은 2006년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음.
- 조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임.
-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 상위법령과 같이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조례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3조(정의)의 각 호에 따라 조례에서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경제학적 측면과 향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와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라고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	제2조(정의) ① ----- -----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7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의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4. 1.~4. 21.)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p> <p>3.·4. (생 략)</p> <p>② (생 략)</p>	<p>제2조(정의)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개정요청을 받고 상위법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개정이므로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박종배(02-2133-6380)